

한의학대학 교육기본시설 운영관리내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의학대학 내의 교육기본시설의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 기본 시설의 설치) 한의학대학 학장은 훌륭한 한의사 양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, 교수 및 연구자들이 제대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강의실, 실습실, 임상술기실, 세미나실, 강당, 교수실, 실험실 등 한의학대학 내의 교육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교육 기본 시설의 운영, 관리) 한의학대학 학장은 교육관련 기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, 감독해야 하며, 그 업무에 필요한 예결산 집행권을 가진다.

제4조(교육 기본 시설의 운영, 관리 위임) 한의학대학 학장은 직원, 교수 중에서 교육기본시설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,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